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연대 발기 선언문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회복시키는 학교로

가칭 「학교상담법」, 일명 ‘유달리법’ 제정을 제안하며

우리는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이 시민모임을 시작한다.

자살 위험, 반복적 자해, 학대 피해, 심각한 고립, 폭력 위험에 놓인 학생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실제 위기에 처한 학생을 학교와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인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묻는다.

학생의 무기력은 곧바로 우울 위험인가.

학생의 산만함은 곧바로 ADHD 의심인가.

학생의 분노와 침묵은 곧바로 위험 신호인가.

아이가 “학교가 숨 막힌다”고 말할 때, 학교는 먼저 “우울 위험인가?”를 묻기 전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기에 지금 숨이 막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이가 수업을 거부하고 관계를 피할 때, 학교는 먼저 “부적응인가?”를 묻기 전에 “이 아이는 어떤 관계와 기대 속에서 자기 삶을 잃어버렸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이가 분노하고 무기력해질 때, 학교는 먼저 “고위험군인가?”를 묻기 전에 “이 아이는 어떤 기준과 믿음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다.

상담은 분류가 아니다.

학생은 자기 삶을 찾아가는 존재다.

현재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학교보건법상 정신건강 상태 검사 조항에 기대어 선별·분류·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되어 왔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것과, 학생의 삶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검사는 학교보건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이후 학생을 상담하고, 기록하고, 외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학교 안에서 사후 지원하는 과정은 학교상담의 영역이다. 이 과정을 학교보건법의 부속 절차로만 둘 수는 없다.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다.
검사는 학생을 규정하는 이름이 아니다.
검사는 학생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제한적 참고자료일 뿐이다.

검사 결과가 상담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처럼 작동할 때, 학생은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분류되는 대상이 된다. 학생의 말, 생활 맥락, 관계의 변화, 담임교사의 관찰, 상담교사의 전문 상담, 학부모와의 협력, 실제 위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가칭 「학교상담법」, 일명 ‘유달리법’ 제정을 제안한다. 여기서 ‘유달리’는 특정 학생의 실명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병명과 문제행동으로만 불렸던 아이, 그러나 자기 마음의 언어를 되찾아야 할 모든 아이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유달리법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유달리법은 문제행동을 미화하는 법이 아니다.
유달리법은 정신과 진료를 막자는 법도 아니다.

유달리법은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되, 그 행동 뒤의 마음을 읽고, 학교 안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문제행동을 곧바로 병명과 위험군으로 단기 전에, 학교 안에서 학생의 생활 맥락과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려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우리가 오마이뉴스 기사와 사례자료를 통해 소개한 한 아이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ADHD 진단 이후 스스로를 “저 ADHD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던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한 담임교사가 “왜 그랬어?”라고 몰아붙이기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병명 말고 자기 마음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교사 한 명의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좋은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맡겨진 교육은 제도가 아니다.
아이의 삶을 읽는 일이 개인의 역량과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상담법이 필요하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에게 상담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법도 아니다. 오히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 구조를 법제화하여, 학생을 위험군으로만 분류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이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보건 전문가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는 1차 교육상담자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내면과 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교육상담 전문가다.

이 세 역할은 협력해야 하지만 서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보건교사가 상담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상담교사가 보건행정이나 단순 위험관리 업무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담임교사는 위험 징후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관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삶을 읽고 관계를 맺는 교육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독립적 전문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 회복의 중요한 협력자다. 그러나 학부모 민원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 업무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민원은 학교 관리자의 공식 책임으로, 상담은 학생 회복을 위한 협력 과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비밀도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상담 내용은 학생을 낙인찍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학생의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자료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학교를 원한다.

- 학생이 병명보다 먼저 자기 언어를 가질 수 있는 학교.
- 담임교사가 학생의 삶을 읽는 교육자로 설 수 있는 학교.
- 상담교사가 독립적 전문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 학부모가 학생 회복의 협력자로 참여하는 학교.
- 학생의 내면 정보가 보호되는 학교.
- 위기 학생은 신속히 보호하되, 모든 학생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취급하지 않는 학교.
- 학교 안 관계 회복과 성장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 학교.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연대의 내부 운영 원칙이 아니라, 가칭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입법 원칙으로서 다음 10대 원칙을 제안한다.

- 첫째,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 둘째,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 셋째, 학생은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넷째,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여야 한다.
- 다섯째,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1차 교육상담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 여섯째,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독립적 전문 주체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일곱째,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
- 여덟째,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학부모는 학생 회복의 협력자로 참여해야 한다.
- 아홉째, 의료기관 연계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 열째, 학교상담은 학교 안 관계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10대 원칙은 우리가 요구하는 학교상담법의 기본 방향이며, 앞으로 시민입법안 마련과 정책 협의의 기준이다.

우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법적 근거와 운영 실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보건법상 정신건강 상태 검사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 이후의 상담, 기록, 전문기관 연계, 의료기관 권유, 사후지원은 독립적인 학교상담법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시민 발기인을 모으고, 학교 현장의 사례를 기록하며, 학교상담법 시민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학생, 심리상담 전문가, 법률가, 교육정책 전문가와 함께 학생을 환자로 만들지 않는 학교상담 체계를 시민의 힘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이다.

학생의 고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삶의 질문일 수 있다.

학교가 그 질문을 듣지 않고 학생을 분류할 때, 교육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가 된다. 학생을 보호한다는 말이 학생을 환자로 만드는 순간, 학교는 이미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발한다.

학생의 어려움을 병명으로만 단지 않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삶을 읽는 교육자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상담이 분류와 연계의 행정 절차로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학교가 다시 학생의 삶을 듣는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연대를 시작한다.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상담은 분류가 아니다.
학생은 자기 삶을 찾아가는 존재다.

2026년 5월 26일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연대
학생 마음건강과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기위원 일동